

임업후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

임업후계자로 선발되신 이후에,
일정한 자격을 갖추면
다음 장에 안내되어 있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각 사업에 대한 궁금증은
해당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(아래 참조)

◇ 산림사업 종합자금 용자

문의처 : 산림조합중앙회 콜센터 (1544-4200)
또는 지역 산림조합(대출기관) 용자 담당
또는 산림청 종합자금 담당 : 042-481-4192

◇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

문의처 :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
또는 산림청 산림소득 담당 : 042-481-4209

◇ 세제감면

문의처 : 산림청 임업지원 담당 : 042-481-4155

첫째. 산림사업 종합자금 용자 ('20년 산림사업종합자금집행지침 중 발취)

□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사업

(1) 사업대상자

- 독립가, 임업후계자 또는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

(2) 지원자격 및 요건

-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임업 관련 교육을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(기간 내 합산 가능) 이수한 자
 - 사이버교육 및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은 인정하지 아니함
 - 교육이수 계획만 있을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
- 지원제외 대상
 - 최근 3년 이내에 동일목적의 사업으로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을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 자(신청일 기준)
 - 단, 사업자로 선정되어 대출금을 받은 자가 당해연도 용자한도 이내에 추가로 사업할 경우 동일목적의 사업이라도 지원 가능(당해연도 마감연장분 포함)
 - 법인사업자는 대출 불가(개인 또는 임업분야 개인사업자만 대출 가능)
 - 산림조합·농협·수협 상근 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
 - *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산림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.(단, 만 65세 이하에 한함)
 - ** 다만,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
 - 산림소득분야 사업(국비, 지방비 등 매칭사업) 등 타 임업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
 - * 대출 이후 타 임업정책사업 관련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
 - ** 다만, 자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 용자 신청할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용자 신청가능
 - 병역미필자,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
 -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및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

(3) 지원대상 및 형태

- 전문임업인이 임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

(단위 : %, 년)

사업명	금리	용자 기간			용자한도	용자비율
		계	거치	상환		
- 장기수 사업	1.0	35	20	15	사업자당 300백만원이내	사업비의 100%
- 임도시설		35	20	15		
- 사립휴양시설조성		35	20	15		
- 단기산림소득지원	2.0	15	5	10		

(4) 사용용도 및 범위

- 장기수 사업
 - 장기수·속성수의 조림 및 숲가꾸기, 유실수·조경수의 생산 자금 및 임야 매입·임차 자금
- 임도시설 사업
 - 임도의 신설 및 보수
- 사립휴양시설 조성
 -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, 본지침의 사립휴양시설조성사업 용도 및 자격요건 동일
 - *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자(사업자)가 법인일 경우 법인 구성원이 개별사업수행자로서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능
 - 사립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임야매입·임차 가능
- 단기산림소득지원 사업
 - 종자·종묘, 임산물 생산·재배를 위한 시설·기계장비 및 비료 등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·재배·유통·가공·관리에 소요되는 것 일체 (임야매입·임차 가능)
 - * 비료의 경우 「비료관리법」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한함
 - * 관리인 인건비 소요액은 대한건설협회 ‘2020년 상반기 적용 보통인부 노임단가’ 적용 하되, 대출기관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 가능
 - * “화물자동차”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에 한함

둘째.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대상자 자격부여

(’20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중 발췌)

가.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

구분	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									
	공모사업	소액사업								
사업대상자	입업후계자, 독립가, 신지식농업인(입업분야), 생산자단체	임업인 등, 생산자단체								
대상자 선정	지방자치단체	지방자치단체								
보조비율	국고 40%, 지방비 20%, 용자-, 자부담 40%	국고 20%, 지방비 30%, 용자 30, 자부담 20%								
신청기간	전년도 4~9월	~전년도 1월20일								
사업 목적	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산화·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	작업로,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								
지원 내용	(약용·약초류) 산지정리작업, 울타리 등 감시시설, 관정·관수시설, 작업로, 묘목식재, 종자파종, 관리사 등 (산나물류·수실류·수목부산물류) 관정·관수시설, 작업로 시설, 감시시설, 액비저장시설, 저장·건조시설, 관리사 등 (산림버섯류) 재배하우스·관정·관수·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생산시설 등 *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굵기, 가지치기, 숙아베기 및 관정·관수시설 (관상산림식물류)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, 하우스, 관정·관수시설, 자동화 시설, 분재 생산시설, 포트묘 생산시설,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									
지원 한도 (총사업비 기준)	(노지재배) 1억원 ~ 5억원 이내 (시설재배) 2억원 ~ 10억원 이내 * 설계·감리비(5% 이내), 기반 조성비(45% 이상), 식재인건비 10% 이내, 종자·묘목구입비(30% 이내), 기타 부대비(10% 이내) 등으로 구성	1억원 미만 * 단일사업으로 운영 가능(종자·종묘 구입은 단일사업 불가)								
기타	- 공모사업 지원조건(품목별 면적기준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품목의 종류</th> <th>세 부 내 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약용류·약초류·산나물류·수실류·수목부산물류</td> <td>25,000㎡/개소 이상 * 단,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</td> </tr> <tr> <td>산림버섯류</td> <td>(노지 ; 송이산가꾸기 포함) 3,300㎡/개소 이상 (시설 : 재배시설, 톱밥배지 생산시설) 1,650㎡/개소 이상</td> </tr> <tr> <td>관상산림식물류</td> <td>(노지) 10,000㎡/개소 이상, (시설) 1,000㎡/개소 이상 * 단,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도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2개 이상의 종류를 동시에 지원 받고자 할 경우, 각각의 사업면적이 면적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(예시) 약용류·버섯류 생산시설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, 각각의 사업면적이 약용류 25,000㎡/개소 이상, 버섯류 3,300㎡/개소 이상이어야 함</p>		품목의 종류	세 부 내 용	약용류·약초류·산나물류·수실류·수목부산물류	25,000㎡/개소 이상 * 단,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	산림버섯류	(노지 ; 송이산가꾸기 포함) 3,300㎡/개소 이상 (시설 : 재배시설, 톱밥배지 생산시설) 1,650㎡/개소 이상	관상산림식물류	(노지) 10,000㎡/개소 이상, (시설) 1,000㎡/개소 이상 * 단,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도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
품목의 종류	세 부 내 용									
약용류·약초류·산나물류·수실류·수목부산물류	25,000㎡/개소 이상 * 단,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									
산림버섯류	(노지 ; 송이산가꾸기 포함) 3,300㎡/개소 이상 (시설 : 재배시설, 톱밥배지 생산시설) 1,650㎡/개소 이상									
관상산림식물류	(노지) 10,000㎡/개소 이상, (시설) 1,000㎡/개소 이상 * 단,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도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									

나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

구분	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																								
	공모사업		소액사업																						
사업대상자	입업후계자, 독립가, 신지식농업인(입업분야), 생산자단체		임업인 등, 생산자단체																						
대상자 선정	지방자치단체		지방자치단체																						
보조비율	국고 40% 지방비 40% 용자 -, 지부담 20%		국고 20% 지방비 30% 용자 30, 지부담 20%																						
신청기간	전년도 4~9월		~전년도 1월20일																						
사업 목적	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·현대화를 지원	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 내용	<p>○ 목재생산을 위해 대상지 전체면적의 기존입목에 대한 숲가꾸기(모두베기 아님) 사업 실시 + 숲가꾸기를 실시한 산림의 하층에 산나물류, 약초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</p> <p>(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) 속아베기, 천연림보육, 풀베기, 덩굴제거, 가지치기, 어린나무가꾸기, 산물수집 등</p> <p>*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, 가지치기 등 관리비용은 지원 대상 아님 ; 숲가꾸기 사업 대상 아님</p> <p>*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없이 하층의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추진하려는 경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임</p> <p>(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) 종자·종근구입, 산지 묘포장 조성, 임내정리 및 식재, 관수시설, 보호울타리, 작업로, 감시시설, 모노레일, 액비저장시설, 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, 관리사 등</p> <p>*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활용하여 재배를 하려는 경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대상 아님 →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</p>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조건	<p>○ 5ha 이상의 산림 전체에 숲가꾸기 +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려는 자</p> <p>* 산림사업 면적 규모에 따라 사업비율 차등 적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규모</th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업비율</th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숲가꾸기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산기반조성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~10ha 미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% 이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0% 이내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ha 이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% 이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5%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규모	사업비율		숲가꾸기	생산기반조성	5~10ha 미만	10% 이상	90% 이내	10ha 이상	15% 이상	85% 이내	<p>○ 산림 전체에 숲가꾸기 +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려는 자</p> <p>* 산림사업 면적 규모에 따라 사업비율 차등 적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규모</th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업비율</th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숲가꾸기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산기반조성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ha 미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% 이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0% 이내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ha 이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% 이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5%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규모	사업비율		숲가꾸기	생산기반조성	10ha 미만	10% 이상	90% 이내	10ha 이상	15% 이상	85% 이내
규모	사업비율																								
	숲가꾸기	생산기반조성																							
5~10ha 미만	10% 이상	90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
10ha 이상	15% 이상	85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
규모	사업비율																								
	숲가꾸기	생산기반조성																							
10ha 미만	10% 이상	90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
10ha 이상	15% 이상	85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 한도 (총사업비 기준)	1억원 ~ 5억원 이내 (2~3년간 분할지원)		개소당 1억원 미만 (해당년도 지원)																						
기타	<p>*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(100% 기준)는 설계·감리비(5% 이내), 기반조성비(45% 이상), 식재인건비 10% 이내, 종자·묘목구입비(30% 이내), 기타 부대비(10% 이내) 등으로 구성</p> <p>- 숲가꾸기 사업이 가능한 지역만 대상지로 인정</p> <p>* 숲가꾸기 사업(풀베기, 덩굴류제거는 제외) 준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지 및 모두베기가 기 실행된 사업지는 대상지에서 제외</p> <p>-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, 연접지에서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행</p> <p>* 파쇄, 훈증,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%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</p>																								

셋째. 세제감면

세제명	감면혜택	법령명
취득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독립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·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세 면제 ▪ 독립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보전산지(99만제곱미터 이내)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	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(일몰기한 2020.12.31.)